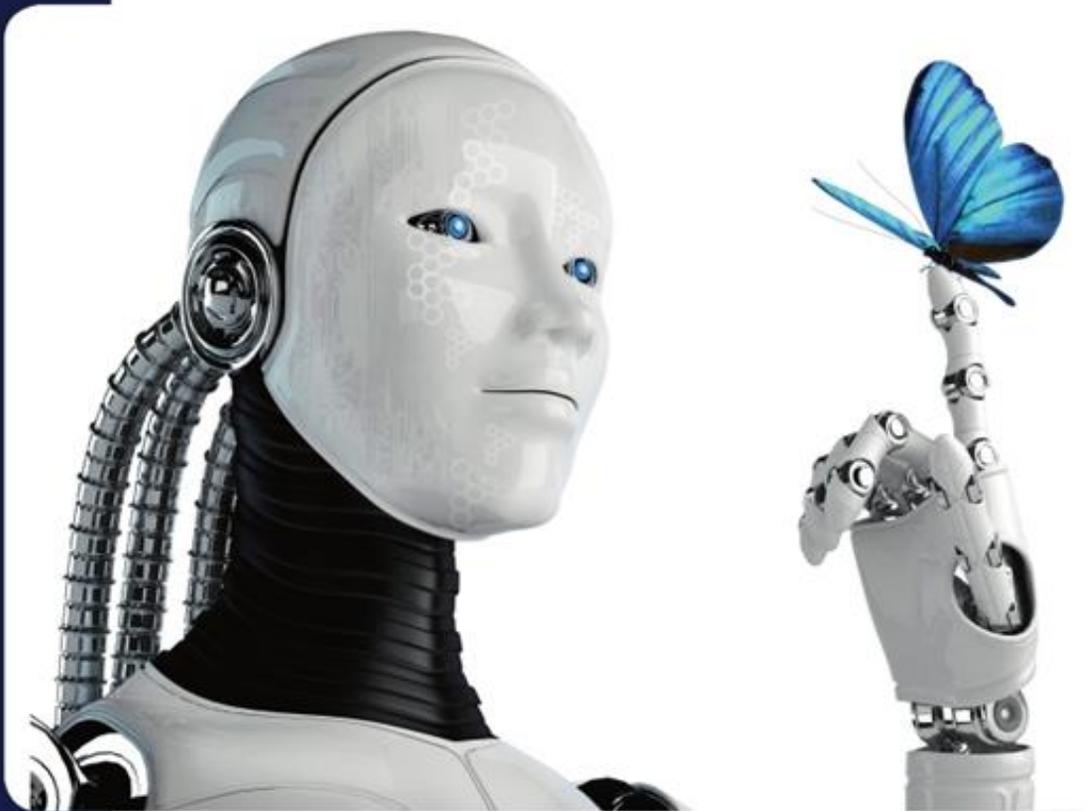


# Newsletter

## June, 2022



# ICR



# 목 차

1. (주)아이씨알-TUV라인란드코리아,  
전기차배터리 시험/인증 업무협약 체결
  2. 2022년 고효율인증 중소기업 시험수수료 지원  
시험기관 상생협력사업 MOU 체결
  3. 시스템인증본부 사무실 이전
  4. 산업환경에서의 전자파 시험 표준 추가
- 
5. 초음파 · 전자기식 유량계“ 적합성평가 안내
  6.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2-20호 무선설비의  
기술기준 일부개정



# (주)아이씨알-TUV라인란드코리아 전기차배터리 시험/인증 업무협약 체결



■ 지난 2022년 5월 11일, (주)ICR은 김포 본사에서 슈테판 호이어 TUV 라인란드(TÜV Rheinland) 자동차 부문 아시아태평양 부사장, 프랭크 쥬트너 TUV 라인란드 코리아 한국 지사장, 김덕용 ICR 대표이사, 심상우 ICR 총괄 부사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**TUV 라인란드 코리아와 전기자동차용 배터리 분야 업무협약(MOU)**을 체결하였습니다.



■ 이 협약은 'ICR'과 'TUV 라인란드'간에 업무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협력을 통하여 배터리 분야 시험과 인증을 위한 긴밀한 업무협조 구축을 목적으로 하며, **배터리 안전성, 성능 검증 및 인증을 위한 업무를 공동 수행**하고, 전기자동차용 배터리 및 관련 기술에 대해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약속하였습니다.

# (주)아이씨알-TUV라인란드코리아 전기차배터리 시험/인증 업무협약 체결



- ▣ 올해 6월말 완공을 목표로 평택에 대규모 중대형 배터리 전문 시험소를 건설하고 있는 ICR은 독일 시험/인증 전문기관인 TUV 라인란드와 긴밀히 협력함으로써 전기자동차용 배터리 시험/인증 분야에 있어서 상호간에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, 국내 시장을 넘어 해외 시장 진출을 원하는 고객들에게 시험 및 인증 서비스를 원-스탑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
- ▣ ICR과 TUV 라인란드는 이번 배터리 분야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다른 비즈니스까지 협력을 확대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.

☎ 문의처

배터리시험센터 / 박 영 호 센터장

T. 070-5083-2699 / [youngho.park@icrqa.com](mailto:youngho.park@icrqa.com)

# 2022년 고효율인증 중소기업 시험수수료 지원 시험기관 상생협력사업 MOU 체결



## ▣ 대상 품목 : 등기구

- ▶ 지원대상 : '22년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(최초인증 또는 모델추가)을 취득하고자 하는 국내 중소·제조기업
- ▶ 지원예산 : 130백만원, 기업당 최대 3백만원으로 시험수수료 공급가액(VAT제외)의 30% 지원
- ▶ 예산집행 : 공단 → 시험기관 → 중소기업
- ▶ 신청기간(기업 →공단) : '22.5.9(월) ~ '22.5.27(금)까지
- ▶ 시험의뢰기간 (기업 →시험기관) : 공단 별도안내 이후 ~ '22.10.31(월)까지
- ▶ 신청양식 :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
※ 링크 : [공지사항 읽기](#) | [공단소식](#) | [정보마당](#) | [한국에너지공단 \(energy.or.kr\)](#)

## ▣ 사업 운영계획

- ▶ 추진목적 : 중소·제조기업의 고효율인증 취득에 소요되는 시험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상호간 상생협력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

# 2022년 고효율인증 중소기업 시험수수료 지원 시험기관 상생협력사업 MOU 체결



▶ 사업명 : 2022년 고효율인증 중소기업 시험수수료 지원  
상생협력사업

▶ 사업기간 : 협약일로부터 ~ 2022. 10. 31.(약 6개월)

▶ 사업비 운영 : 시험수수료 300천원(VAT포함)  
공단지원금(81천원/건, VAT제외)

▶ 상생협력사업 MOU 체결식



☎ 문의처

안전평가센터 / 양 영 준 전임연구원  
T.070-5083-2631 / yangyj@icrqa.com



# 시스템인증본부 사무실 이전

■ ICR 시스템인증본부가 서울특별시 가산동(가산디지털단지역)으로 사무실을 이전하였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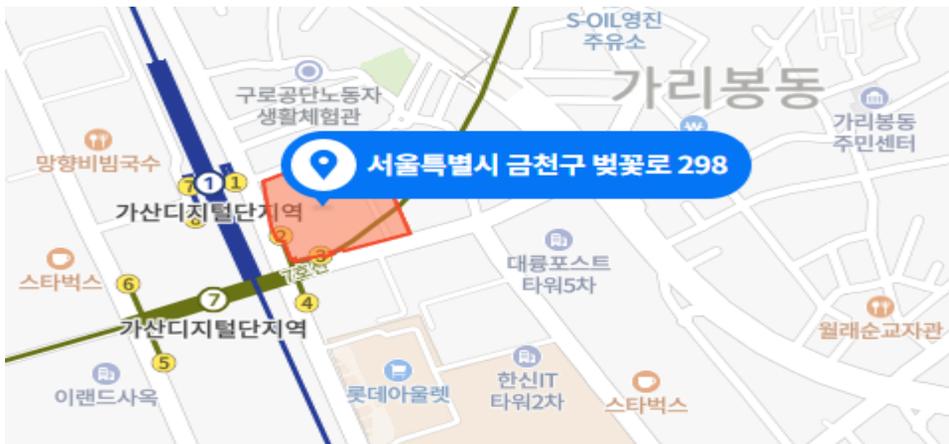
2022년 5월 23일부터 가산사업본부에서 ISO 9001 / 14001 / 45001 / 13485 / 37001 / 37301 등 기존의 ISO 경영시스템 인증 및 심사원 교육 관련 업무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.

■ ISO 심사원 교육과정은 정부의 코로나19 감염병 방역 정책 상황에 따라, 가산사업본부에서 대면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.

## ■ 가산사업본부

(우) 08510 서울특별시 금천구 벚꽃로 298(가산동)  
대룡포스트타워6차 15층 1501호

TEL : 02-6351-9001 FAX : 02-6351-9007



☎ 문의처

시스템인증본부 / 황 현 수 주임연구원  
T. 070-5083-2660 / hhs@icrqa.com



# 산업환경에서의 전자파 시험 표준 추가

## ▣ 일반사항

▶ 2021년 2월에 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 공고

(국립전자연구원공고 제2021-10호, 2021.2.8.)가 개정됨에 따라,  
기존 **KN 61000-6-2:2012**는 폐지되었고 **KS C 9610-6-2:2019**로  
개정 되었습니다.

KN 61000-6-2:2012					
내성 시험명	시험 조건		단위	시험 표준	기준
전압 강하	0 1		% 잔여전압 주기	KN 61000-4-11	B
	40 12	70 30	% 잔여전압 주기		C
순간 정전	0 300		% 잔여전압 주기	KN 61000-4-11	C



KS C 9610-6-2:2019					
내성 시험명	시험 조건		단위	시험 표준	기준
전압 강하	0 1		% 잔여전압 주기	KS C 9610-4-11	B
	40 12	70 30	% 잔여전압 주기	IEC 61000-4-34	C
순간 정전	0 300		% 잔여전압 주기	KS C 9610-4-11 IEC 61000-4-34	C



# 산업환경에서의 전자파 시험 표준 추가

- ▶ 산업환경에서의 전자파 내성 시험 방법 중 전압 강하 및 순간 정전 시험에 **IEC 61000-4-34에 대한 표준이 추가**되었습니다.

## ■ KS C 9610-4-11

- ▶ 전압 강하, 순간 정전, 전압 변동 내성 시험 방법에 대한 표준입니다.
- ▶ 이 표준은 50/60 Hz 교류 회로망에 연결될 때 **상(phase)당 16 A 이하**의 정격 입력 전류를 갖는 전기 및 전자 기기에 적용됩니다.

## ■ IEC 61000-4-34

- ▶ 전압 강하, 순간 정전, 전압 변동 내성 시험 방법에 대한 표준입니다.
- ▶ 이 표준은 50/60 Hz 교류 회로망에 연결될 때 **상(phase)당 16 A 초과**의 정격 입력 전류를 갖는 전기 및 전자 기기에 적용됩니다.

# 산업환경에서의 전자파 시험 표준 추가

## ▣ 시험 장비 사진 (SAG 발생기, Variac)



▣ ICR에서는 전압강하시험이 가능하며 현장시험도 진행하고 있습니다.

**☎ 문의처**  
산업안전센터 / 양 대 송 선임연구원  
T. 070-5083-2658 / yds@icrq.com

# “초음파·전자기식 유량계” 적합성평가 안내



## ▣ “초음파·전자기식 유량계” 적합성평가 대상 여부

▶ 유량계를 구성하는 구성품 중 변환기는 「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」[별표 1] 제11호 자목 39)에 속하는 자기시험 적합등록 대상 기자재이며, 센서는 적합성평가 대상 기자재가 아님.

### ▶ 제품 유형별 적합성평가

- 센서 분리형 제품 : 변환기만이 적합성평가 대상 기자재이나, 변환기에 센서를 포함하여 적합성평가를 받을 수 있음.
- 센서 일체형 제품 : 센서와 변환기가 일체형인 제품은 일체형으로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함.

## ▣ 센서 변경 시 변경신고 유형

### 1) 센서 분리형 제품으로, 변환기만 적합성평가 받은 경우

- 변환기와 같이 납품되는 센서가 다양하게 변경되어도 전파법 제58조의2 제5항에 따른 변경신고 의무에 해당 사항 없음.

# “초음파 · 전자기식 유량계” 적합성평가 안내



## 2) 센서 분리형 제품으로, 변환기에 센서를 포함하여 적합성평가를 받은 경우

- 센서가 변경되는 경우, 「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」제15조 제3항에 따른 적합성평가기준과 관련되지 아니한 변경 사항(단순 변경)으로 변경신고 대상임.

## 3) 센서 일체형 제품으로 적합성평가를 받은 경우

- 센서가 변경되는 경우, 「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」제15조 제3항에 따른 적합성평가기준과 관련되지 아니한 변경 사항(단순 변경)으로 변경신고 대상임.

### ▣ 기타사항

- ▶ 유량계가 「계량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EMC 시험항목 중 EMS에 대한 시험을 진행하였다면, 해당 시험성적서에 대한 시험결과를 활용하여 전파법에 따른 적합성평가 시험성적서에 활용 가능함.

출처 : 2022.05.04

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적합성평가과 보도자료

☎ 문의처

전파시험센터 / 박 종 민 책임연구원  
T. 070-5083-2664 / kaelu@icrqa.com



#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일부개정

<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2-20호>

■ 전파법 제45조(기술기준) 및 무선설비규칙 제19조(세부기준 등의 고시)제2항제2호에 따른 「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.

2022년 05월 10일  
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

■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70GHz대 물체감지센서용 무선기기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의 조건에 적합할 것

## 1. 주파수대역, 전력 등

주파수 대역 (GHz)	복사전력(첨두전력)	비고
76 ~ 81	100 mW 이하 (안테나 절대이득 포함)	평균전력밀도는 -16 dBm/MHz 이하일 것

2. 주파수 허용편차는 지정주파수 이내일 것

3. 점유주파수대폭은 5GHz 이하일 것

#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일부개정



<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2-20호>

## 4. 스푸리어스영역에서의 불요발사는 다음의 기준값 이하일 것

주파수	기준값	기준 대역폭
1 GHz 미만	-36 dBm	100 kHz
1 GHz 이상	-30 dBm	1 MHz

## 5. 수신 또는 송신 대기 상태의 부차적 전파발사는 다음의 기준값 이하일 것

주파수	기준값(평균값)	기준 대역폭
1 GHz 미만	-54 dBm	100 kHz
1 GHz 이상	-47 dBm	1 MHz

## 6. 자동차, 항공기, 선박, 철도 등 이동체에서 사용을 금지하며, 건물 내 전원에 연결되어 설치 운용되는 기기일 것

## 7. 제조자 또는 판매자는 해당 기기 또는 사용자 설명서 등에 다음 사항을 명시하고 사용자에게 충분히 알릴 것

" 이 기기는 건물내 이용을 목적으로 하며 전파천문 안테나로부터  
반경 2km 범위 이내에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천문대와  
사전 협의하여야 함 "

**문의처**

전파시험센터 / 손민기 전임연구원  
T. 070-5081-0023 / thsalsrl@icrqa.com